

제2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2. 3.

임실군의회 의장

1. 개정이유

「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」(2014.10.17 조례 제3887호)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
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-73호) 개정으로 기업보조금 국비지원 대상이 공장 신·증설 등 투자확대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)
- 나. “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이전기업지원 특례”를 “국고지원이 수반되는 투자기업 지원특례”로 조문 제목 및 내용 정비(안 제24조의1)
- 다.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내용 정비(안 제35조)
- 라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자료

- 가. 관련근거: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
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협의 등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4.12.03 ~ 2014.12.23)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 - 2) 비용추계서 : 불임(미첨부사유서)
 - 3) 관련규정 발췌문 : 불임
 - 4) 규제심사 : 해당없음(기획감사실-13415)
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불임

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”을 “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조제1항 제6호의2”를 “법 제2조제1항제7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상시고용인원”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.

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7조”를 “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”를 “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“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”을 “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사업지원서비스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3호 중 “72(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) 및 73(연구 및 개발업)”을 “62(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), 63(정보서비스업), 70(연구개발업)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9호 중 “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”을 “정부가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0호 중 “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1호 중 “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2호 중 “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”을 “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3호 중 “「국가균

형발전특별법시행령」 제2조의2 규정에”를 “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」 제2조의2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”를 “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외국인투자기업에게”를 “외국인투자기업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5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 단서 중 “1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1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”를 “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3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해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조제7항”을 “영 제2조제8항”으로, “호의 1”을 “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숙박시설 건립”을

“숙박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제20조제3항의 규정”을 “제2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 본문 중 “제14조의 규정을”을 “제14조를”로 한다.

제23조 본문 중 “제15조의 규정을”을 “제15조를”로 한다.

제24조의1의 제목 “(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이전기업지원특례)”를 “(국고지원이 수반되는 투자기업 지원특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
제24조의2 중 “제24조1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4조1에 따른”으로

“1. 국비 : 「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」에 의한다”를 “1. 국비 : 정부는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24조의1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삭제한다.

제26조 중 “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8조 중 “대하여 제22조 규정을”을 “제22조를”로 한다.

제29조 중 “대하여 제23조 규정을”을 “제23조를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, 사업영위기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,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으로, “지원금에

대하여는”을 “지원금을”으로 한다.

제39조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외국인 투자기업”이란 <u>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</u> 기업을 말한다.</p> <p>3. “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”란 <u>법 제2조제1항 제6호의2에</u> 규정한 자를 말한다.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6. “상시고용인원”이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 「<u>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.</p> <p>가. 「<u>소득세법시행령</u>」 제18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</p> <p>나. 「<u>국민연금법</u>」 제3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및 기여금(동법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법 제2조 제1항제5호에</u>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-----.</p> <p>3. ----- ----- <u>법 제2조제1항제7호</u>----- -----.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“상시고용인원”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「<u>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</u>」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10조에서 규정한 <u>지역가입자 제외</u>)</p> <p>다. 「<u>국민건강보험법</u>」 제62조에 <u>서 규정한 보험료 (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)</u>)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9. “연구소”란 「<u>기술개발촉진법</u>」 제7조에서 규정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.</p> <p>10. “산업단지”란 「<u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.</p> <p>11. (생략)</p> <p>12. “생산자서비스업”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<u>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</u>을 말한다.</p> <p>13. “문화산업 및 연구·개발업”이란 「<u>문화산업진흥기본법</u>」 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</p> | <p><삭제>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「<u>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6조----- -----.</p> <p>10. ----- 「<u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8호----- -----.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----- ----- <u>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사업지원서비스업</u>-----.</p> <p>13. ----- -----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에 의한 <u>72(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)</u> 및 <u>73(연구 및 개발업)</u>에 해당하는 연구·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.</p> | <p>-----<u>62(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), 63(정보서비스업), 70(연구개발업)</u>----- -----.</p> |
| <p>14. ~ 18. (생략)</p> | <p>14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19. “단위사업장당”이란 「<u>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</u>」에 의한 “이전건당”을 말한다.</p> | <p>19. ----- <u>정부가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</u>」----- ----.</p> |
| <p>20. “관광사업”이란 「<u>관광진흥법</u>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·숙박·음식·운동·오락·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.</p> | <p>20. ----- 「<u>관광진흥법</u>」 제2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21. “관광사업자”란 「<u>관광진흥법</u>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·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·외국인을 말한다.</p> | <p>21. ----- 「<u>관광진흥법</u>」 제2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22. “관광사업의 종류”란 「<u>관광진흥법 시행령</u>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</p> | <p>22. ----- 「<u>관광진흥법 시행령</u>」 제2조-----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국제회의시설업, 제2종종합휴양업(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),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.</p> |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23.“성장촉진지역”이란 「<u>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</u>」 제2조의2 <u>규정에</u>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</p> | <p>23. ----- 「<u>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</u>」 제2조의2에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4조(구성 등) ① (생략)</p> | <p>제4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| <p>② ----- -----.</p> |
| <p>1. ~ 5. (생략)</p> |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6. <u>기타</u>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</p> |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|
| <p>③·④ (생략)</p> |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| <p>제5조(기능) ----- -----.</p> |
| <p>1. ~ 3. (생략)</p> |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4. <u>기타</u>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</p> |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|
| <p>제8조(외국인투자진흥부서 설치·운영) ① (생략)</p> | <p>제8조(외국인투자진흥부서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② 외국인 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</p> | <p>②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과장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 외국인투자</u>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</p> <p>제10조(지방세 감면) <u>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</u>에 대하여는 「임실군세 감면조례」에 따라 취득세,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) <u>법 제13조의 규정</u>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,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『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』를 준용한다.</p> <p>제12조(산업입지보조금 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과 <u>제2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| <p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10조(지방세 감면) <u>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</u>에 대해서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) <u>법 제13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산업입지보조금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라</u>----- <u>제2항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<u>외국인투자기업에게</u> 임대할 수 있으며, 임대료는 「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 | <p>④ ----- ----- ----- <u>외국인투자기업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⑤ <u>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.</p> | <p>⑤ <u>제4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13조(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)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「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」 <u>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| <p>제13조(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) ----- ----- ----- <u>제25조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14조(고용보조금 지원)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<u>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</u>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제14조(고용보조금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4조제4항에 따른</u> ----- -----.</p> |
|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</p> |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당해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| <p>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15조(교육훈련보조금 지원)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<u>별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제15조(교육훈련보조금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제14조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.</p> |
| <p>제17조(국내기업 지원의 준용) 군수는 국내에 기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실군내에 이전·증설·창업하는 경우 제20조, 제21,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과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12조와 <u>13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</p> | <p>제17조(국내기업 지원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3조에 따라</u>----- -----.</p> |
| <p>제18조(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) ① <u>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| <p>제18조(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) ① <u>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</u> 외국인 투자기업에 ----- -----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1. 영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</p> <p>2. 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19조(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) ① 군수는 영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</p> <p>4.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</p> | <p>1. ----- 제1항----- -----</p> <p>2. 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) ① ----- 영 제2조제8항----- -----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숙박시설</p> <p>4. 그 밖에 -----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「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3조를 준용한다.</p> | <p>② 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| <p>③ 제1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1조(기존기업의 공장설립시 시설 투자비 지원)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군내 미분양부지에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계·자동차부품제조업 2. 식품관련제조업 3. 첨단업종 | <p>제21조(기존기업의 공장설립시 시설 투자비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20조제3항----- -----.</p> |
| <p>제22조(고용보조금) 군수는 제20조 제1항과 제20조의1, 제21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</p> | <p>제22조(고용보조금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시 고용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생산자 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| <p>----- ----- 제14조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3조(교육훈련보조금) 군수는 제20조제1항과 제20조의1, 제21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생산자 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| <p>제23조(교육훈련보조금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5조를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4조의1(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이전기업지원특례) ①군수는 「국가 균형특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」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</p> | <p>제24조의1(국고지원이 수반되는 투자기업 지원특례) ① 군수는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, 투자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② 입지보조금은 「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」에 따른다.</p> <p>③ 투자보조금은 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10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 단,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합해서 일반기업인 경우 100억원,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 2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④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의2(지방비의 보조금부담) 제24조의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및 군비의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국비 : 「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</p> |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제24조의2(지방비의 보조금부담) 제24조의1에 따른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국비 : 정부가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의한다.</p> | <p>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따른다.</p> |
| <p>2. (생략)</p> |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6조(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) 제20조, 제21조,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.</p> | <p>제26조(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) ----- 제25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8조(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) 군수는 제27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| <p>제28조(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) ----- ----- 제22조를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9조(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) 군수는 제27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| <p>제29조(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) ----- ----- 제23조를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32조(민간기관의 파견근무)</p> | <p>제32조(민간기관의 파견근무)</p> |
| <p>① (생략)</p> |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내</p> | <p>② 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35조(투자기업의 사후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·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,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37조(지원 등의 취소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39조(참석수당 등) <u>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9조의 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| <p>----- -----.</p> <p>제35조(투자기업의 사후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, 사업영위기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,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7조(지원 등의 취소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지원금을</u> ----- -----.</p> <p>제39조(참석수당 등) ----- <u>제3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투자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향후, 투자 기업의 투자시기 및 투자규모 등을 예상할 수 없어 발생하는 비용 산정 불가

-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1건 지원 : 일진제강(2011년), 21.6억(군비)

4. 작성자

지역경제과장

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2014A전북임실065 | | | |
| 정책명 |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| | | |
| 소관부서 | 기관명 | 전라북도 임실군 | | |
| | 부서명 | 지역경제과 | | |
| | 담당자명 | 양경호 | 전화번호 | 063-640-2455 |
| 주요 분석평가 내용 (지역경제과) | | | | |
|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 |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. 제 4조 투자위원회 구성과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조항에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는 내용 추가 필요. | | | |
| 검토의견 반영 결과 (지역경제과) |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음 | | | |
| 2014년 12월 24일 | | | | |
| 지역경제과장 | | | | |
|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| | | | |

관 계 법 령 (규정)

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

제4조(지원대상)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이전기업, 지방 신·증설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.

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, 사업영위기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,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□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
제2조(용어의 뜻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.
4. “상시고용인원”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.
8. “생산자서비스업”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.
9. “문화산업 및 연구·개발업”이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62(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), 63(정보서비스업), 70(연구개발업)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.

제30조(지원특례) ①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